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자 치 단 체 출 자 · 출 연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규정하고, 검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의 종류,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인사감사 방법,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정비, 사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마련(안 제8조의2)

-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시·도에서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시·군·구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및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안 제9조의2)

- 1)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업무의 공공성, 공정한 직무수행의 필요성, 국가·지방공무원, 국가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안 제10조의2)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범죄 등으로 비위 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름·나이·주소 등을 관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안 제10조의3)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인사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마.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

- 1) 지방계약법령의 체계변경 및 다수 조문 개정으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준용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신규로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3항)

- 1)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은 자회사와의 수

의계약 규정이 없어 동일 수준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대행하거나 소유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자회사(해당 출자·출연 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법인)와의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사.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규정 (안 제14조의2)

- 1)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
- 2) 이에 따라 설립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기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출연기관으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 경영공시 항목 추가 (안 제21조)

- 1)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으로 재무현황과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자본금 출자나 기본재산 출연 현황, 사채발행,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등을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자. 통합공시 기준 제정(안 제22조)

- 1) 현행 경영실적 평가 대상 출자·출연 기관에서 전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통합공시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통합공시의 기준과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통합공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항목별 세부기준, 품질관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등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 제3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연구원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시·군·구는 동조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을 말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보에 신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출자·출연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⑥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합격취소 등의 요구 기준 및 내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 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취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 등을 결정하기 10일 전에 합격 취소 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 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⑧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의견,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격취소 등의 결과를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인사감사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외부감사의 대상)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2.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 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
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익금액(운영성과표의 사업수익 혹은 매 출액이나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함)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

제21조의 제목 “(경영공시의 시기 등)”을 “(경영공시의 대상과 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2.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채발행 또는 차입
4. 출자·출연 기관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제21조제2항(중전의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제22조의 제목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를 “(통합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실적 평가”를 “경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공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기준
 2.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3.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공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는 이 영 시행 후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삭 제>
② ~ ④ (생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생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연구원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시·군·구는 동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신 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을 말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신 설>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
사 의뢰 등) ① 법 제15조의2제
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변
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공급,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
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
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

세법 처벌법」, 「지방세기본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
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
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
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
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
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
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
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
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
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

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보에 실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출자·출연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⑥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합격취소 등의 요구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취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 등을 결정하기 10일 전에 합격취소 등

<신 설>

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 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⑧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의견,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격취소 등의 결과를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인사감사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

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 제86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② (생략)

<신설>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4조의2(외부감사의 대상)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2.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
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수

	<u>익금액(운영성과표의 사업수익 혹은 매출액이나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함)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u>
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신설>	제21조(경영공시의 대상과 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2.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채발행 또는 차입 4. 출자·출연 기관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2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통합 공시) ①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하고 통합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통합 공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2. 경영 성과와 재무 현황 3.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결과 4.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 ----- 경영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 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공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기준 2.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3.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공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신 설>	④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44-205-3963